



제 41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지원기반 구축 및 인정 등에 관한 사항 >
■ 박충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003호)

2024. 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3
IV. 총괄 검토	4
1. 제정안의 발의 배경	4
2. 제정안의 체계	8
3. 총괄 검토의견	9
V. 주요 항목별 검토	11
1. 제1장 총칙	11
가. 목적·정의·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11
2. 제2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지원기반 구축	15
가.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정보관리체계 구축(안 제5조·제6조)	15
3. 제3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17
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인정취소 등(안 제7조·제8조·제9조·제10조)	17
4. 제4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	23
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 및 금융 지원(안 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	23
나. 포상 및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안 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	27
5. 제5장 보칙	31
가. 업무의 위탁, 현장조사, 감독명령 등 벌칙, 과태료 등(안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31
6. 부칙	35
가. 시행일 적용례,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부칙 제1조부터 제7조까지)	35

※ 참고자료

1.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포함) 증가추이 및 제도개편 연혁 42
2.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주요 지원제도 4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충권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5. 30.

다. 회 부 일 : 2024. 6. 11.

II. 제안이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해 1981년 최초 시행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신고·인정함으로써 조세감면·연구인력지원·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자격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 육성을 통한 민간R&D 활성화 및 이에 따른 기술혁신·국가 기술 경쟁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

그러나 근거법령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초연구 지원 및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조문이 혼재되어 있으며 법령 내에 관련 조항이 산재해 있어 규정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지원강화, 기업연구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 제정 등 민간 R&D 촉진을 요구하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법제화하기 위한 기반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기업의 연구개발 조직 및 부서에 대한 규정을 기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의, 관

리·운영 규정,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과 연구자 사기진작 등의 내용을 담아 규정하고 이를 정부에서 수행하는 각종 기업혁신지원의 근거 법률로서 제정하여 민간 R&D 활성화의 초석을 다지고자 함.

Ⅲ.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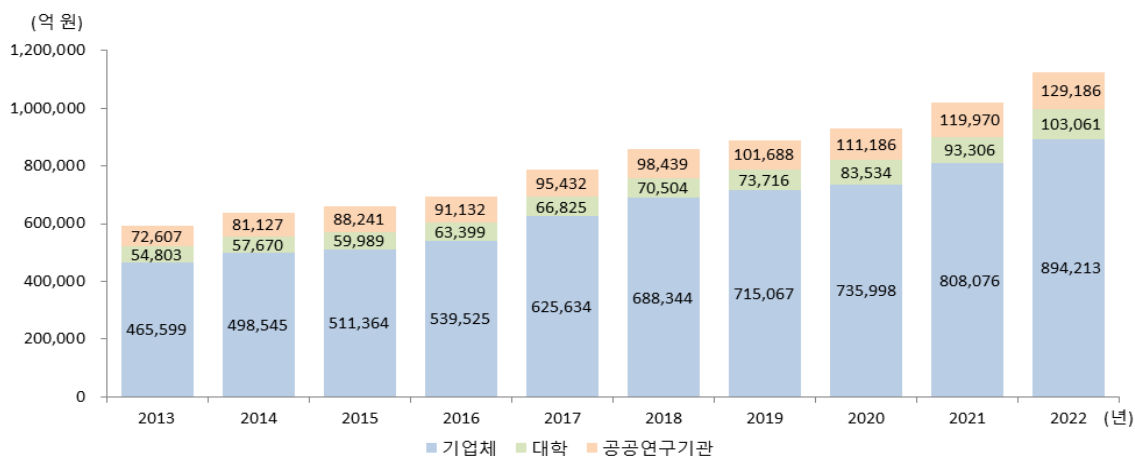
- 가. 이 법은 기업 등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설립이 가능한 기업·기관·단체를 명시하고,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함(안 제2조).
- 다. 국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 및 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통계를 작성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및 제5조).
- 라. 기업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0조 및 제28조).
- 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의 공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4일을 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로 함(안 제19조).

IV. 총괄 검토

1. 제정안의 발의 배경

우리나라 전체 R&D에서 민간기업이 수행하는 R&D의 연구개발비는 2022년 기준 89조 4,213억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R&D 연구개발비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음.

<우리나라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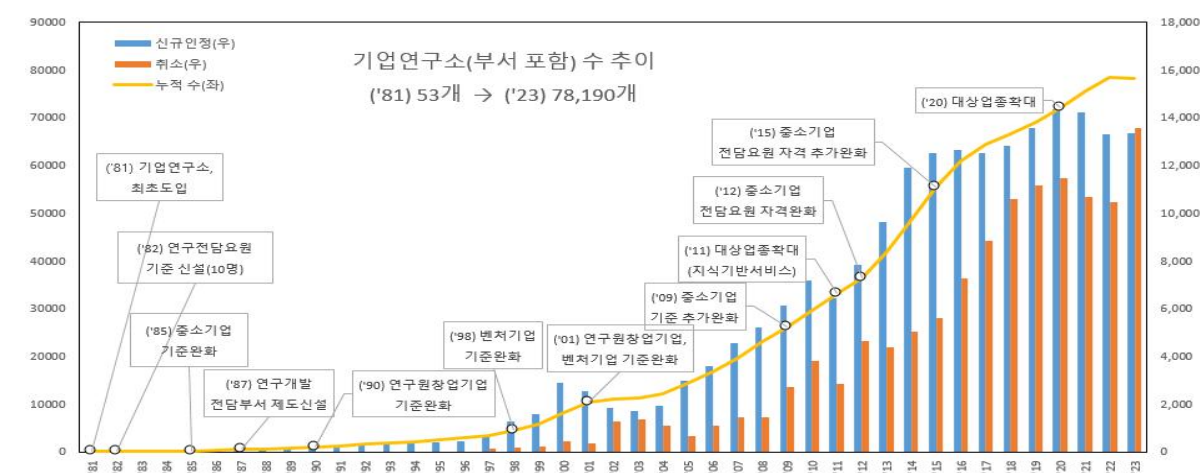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 보고서

이러한 민간 R&D 성장 배경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제도가 있는데, '70년대 중반 이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R&D분야에서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역량 제고 및 활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81.10월 46개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최초로 인정하고 지원 수단으로서 'R&D조세지원'과 '연구요원 병역특례'를 신설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제도가 도입되었음.

기업부설연구소 제도 도입 이후 기업 R&D 저변확대를 위하여 인정

요건완화, 신청 처리기간 단축 등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용이하도록 지속적인 제도개편이 이루어지면서 '23년 말 기준 약 78,000개의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운영 중이며, 연구원 수는 약 458,000명이 되는 등 그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왔음([참고 1]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포함) 증가추이 및 제도개편 연혁).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포함) 증가추이>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편, 기업부설연구소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실 운영에 관한 고발성 민원 증가, 기업부설연구소를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브로커 활동, 준수사항 위배 적발 시 자진 취소를 통한 조세 지원 환수 회피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 역시 증대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기간 무제한, 현장점검의 법적근거 미비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임.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에 관한 현행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소속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가 소속된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3.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폐업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폐쇄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경우
4.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보완을 명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이 없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7.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제14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이 제한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이 취소된 기업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14조의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기업부설연구소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는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업무 외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할 것(다만, 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가 해당 소기업의 대표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 또는 가건물,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의5(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제14조의2, 제14조의3 또는 제14조의4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

런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는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 요청, 그에 따른 이용 및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종류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6(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에서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4조의3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이 취소되었을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연구자에 대한 복지·지원체계는 공공부문에 집중되어 있어,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자가 경제성장에 기여한 바에 비하여 그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미비하므로 이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개별 행정부처 단위로 담당 업종별 기업 R&D 지원을 각기 추진하고 있어([참고 2]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주요 지원제도), 기업관점에서 정부지원을 전반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981년부터 약 43년간 기업 R&D의 기초·기반 역할을 수행한 기업부설연구소와 그 소속 연구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기 위하여 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보임.

2. 제정안의 체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지원기반 구축	제5조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제6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제3장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제7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제8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제9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제10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제4장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육성 및 지원	제11조 기술개발 지원
	제12조 연구개발인력 지원
	제13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교육
	제14조 금융 지원
	제15조 조세에 관한 특례
	제16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제17조 홍보사업 등
	제18조 유공자 포상 등
	제19조 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
	제20조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제5장 보칙	제21조 업무의 위탁
	제22조 현장조사
	제23조 감독명령 등
	제24조 자료 제공의 요청 및 비밀유지의무
	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 벌칙
	제27조 양벌규정
	제28조 과태료

3. 총괄 검토의견

제정안은 현행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운영,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인력 지원, 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 지정 등을 통해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현행 「기초연구법」(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에서 이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초연구법」 일부개정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기초연구법」의 목적¹⁾ 및 법적 체계를 고려할 때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규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동 제정안의 경우 지난 21대 국회 제410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안건이었던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²⁾에서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 및 타 정부부처의 이견 조율을 통한 최종 수정의견과 동일하게 발의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타 제정안에 비해 문제될 소지가 있는 검토 사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보임.

1) 「기초연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초연구를 지원·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김영식의원 발의,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120420, 2023. 3.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정안의 심의에 있어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이 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정의가 동어반복적 표현 등으로 불명확하여 조세감면·연구인력지원 등의 정책 수혜 대상이 되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8조제1항제2호의 단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인정 기준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³⁾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조치로 보이나, 자칫 제2호는 필요적 인정 취소사유의 예외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의 항 신설을 통한 입법 조치 등 제정안의 취지를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셋째, 제정안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취소시 진행하는 청문 절차에 대해 현행 「기초연구법」 및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동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⁴⁾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정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3) 검토보고서 p.20~p.21 참고

4) 이정문의원 발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186, 2024. 6. 7.

V. 주요 항목별 검토

1. 제1장 총칙

가. 목적·정의·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1조는 동 제정법률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요약한 것이고, 안 제2조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공공연구기관”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관한 시책 수립·시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는 이 법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일반법의 지위를 가짐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부설연구소”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이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제7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 연구기관을 말한다. 가. 「상법」 제169조의 회사로서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제 정 안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마.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바. 그 밖에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관·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2. “연구개발전담부서”란 기업에서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부서로서 제7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부서를 말한다.

3.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마.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중 직제에 연구개발 기능이 있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실을 운영하는 기관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검토의견

현행 「기초연구법」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정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⁵⁾에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정의 규정은 조세감면⁶⁾⁷⁾·연구인력지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3명 이상. 다만, 소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으로 한다.
 - 1의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다만,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기업은 중기업이 된 날부터 1년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한다.
 2.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3. 제1호 및 제1호의2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2명 이상
 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7명 이상
 5. 그 밖의 기업부설 연구기관: 10명 이상
-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말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 연구기관 및 기업의 연구개발부서가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6)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하고, 같은 호 바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1. · 2. (생 략)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 라. (생 략)

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

7) 「관세법」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①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그

원⁸⁾ 등의 대상이 되는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명확하게 법에서 규정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다만, ①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정의함에 있어서 동어반복적인 표현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 그 개념이 불명확하고, ②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기업부설연구소”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개념에 포함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현행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기준을 참고하여 정의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밖에 이와 유사한 연구기관에서 수입하는 기술개발연구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8) 「기상산업진흥법」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마다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 가운데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 3. (생략)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기상업무에 관련된 연구 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으로 연도별·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2. 제2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지원기반 구축

가.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정보관리체계 구축(안 제5조·제6조)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5조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는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5조(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기업부설연구소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통계의 대상·주기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제6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기업부설연구소등 간의 협력기반을 구축하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안 제5조의 통계조사 작성 규정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지원기반 구축에 필수적인 통계작성에 관한 근거를 현행 대통령령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면서, 유사 입법례¹⁰⁾와 같이 통계작성을 위해 필요한 실태 조사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취지임.

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준수사항) ① 법 제14조의4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략)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 실적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10) 「관광진흥법」

제47조의2(관광통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광통계의 작성·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통계·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산림청장은 매년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을 포함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이하 “통계·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과 전국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목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통계·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통계·실태조사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통계·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제3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인정취소 등(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7조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9조 및 제10조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7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인정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에게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은 명칭, 소재지, 연구 분야나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⑥ 이 법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으로 인정받지 아니하였거나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그 밖에 제4항에 따른 변경사항 신고 절차 및 제5항에 따른 보완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

제 정 안

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를 요청한 경우(다만, 이 법에 따른 별도의 인정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이 폐업한 경우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폐쇄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경우
 5. 제7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제5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으로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9. 제22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 기업부설연구소등의 활동이 없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항제4호의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취소하려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명칭과 주소
2. 인정을 취소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3. 제2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
4. 의견제출기한
5. 청문일자 및 인정 취소 예정일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이 취소된 기업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제7조제2항에 따른 인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 정 안

제9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기업부설연구소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외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할 것(다만, 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가 해당 소기업의 대표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 또는 가건물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4.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받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 실적 등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이 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 실적 등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이 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작성하도록 도와주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받는 행위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2) 검토의견

첫째, 안 제7조제6항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사칭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타 입법례¹¹⁾를 참고하여 “이 법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인~~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8조제1항제2호 단서 “이 법에 따른 별도의 인정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취지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세액공제 인정의 기준 시점과 관련된 것인데,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이나 단서로 예외를 규정하는 것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¹²⁾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¹³⁾에서는 기업부설연구

11) 「물류정책기본법」

제41조(인증서와 인증마크) ③ 인증우수물류기업이 아닌 자는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우수물류기업~~인~~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9조(인증서와 인증마크) ③ 거짓으로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우수서비스사업자~~인~~을 사칭해서는 아니 된다.

1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 3. (생략)

13)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⑥ 자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등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불인정 기준 시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19항¹⁴⁾에서는 「기초연구법」 제14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인정 취소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불인정 기준 시점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기초연구법」 제1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인정이 취소되고 해당 기업은 인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불인정되어야 하나, 만약 인정이 취소되기 전에 기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정 취소를 신청하여 제2호에 따라 인정이 취소되면 인정취소일까지의 기간은 세액공제 기간에 산입되어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안 제8조제1항제2호 단서는 제2호 외의 사유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사유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임.

다만, 안 제8조제1항 단서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는 필요

1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⑬ 법 제1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8항 각 호에 따른 인정취소의 사유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1호 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3제4항제1호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경우: 인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경우: 인정취소일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4호·제7호 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3제4항제2호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경우: 인정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

적 인정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과 같이 제2호에 단서로 예외를 규정하는 것은 필요적 취소사유의 예외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별도의 항을 신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호의 사유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취소를 하기 전에 검토하여 제2호 외의 인정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처분의 이유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제정안의 취지를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안 제8조제2항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취소시 청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에서는 현행 「기초연구법」 및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문 절차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동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¹⁵⁾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정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15) 이정문의원 발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186, 2024. 6. 7.

4. 제4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

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 및 금융 지원(안 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술개발과 연구개발인력 지원, 운영 교육 등에 관한 사항과 금융 지원과 조세 특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1조(기술개발 지원) ① 정부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등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단독 또는 공동 기술개발 2.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 3.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연구개발인력 지원) ①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인력의 양성 및 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인력의 양성 사업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업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퇴직한 연구개발인력 활용 지원사업 3. 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필요한 연구개발인력 채용 지원사업 4. 공공연구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소속 연구인력 파견 지원사업 5.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인력 양성·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사업을 추

제 정 안

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교육) ①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및 관리 실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제도 등에 관한 교육과정(온라인 교육 과정을 포함한다)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금융 지원) ①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의 설립 및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보증제도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조세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2) 검토의견

첫째, 안 제12조제1항제2호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인력의 양성 및 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업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퇴직한 연구개발인력 활용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적 경제주체인

기업에서 퇴직한 연구개발인력까지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제정안의 목적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14조제2항의 신용보증기금¹⁶⁾, 기술보증기금¹⁷⁾, 신용보증재단¹⁸⁾은 각 기금 및 재단의 설립 목적을 고려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 등의 지원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제정안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소속된 기업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것이 그 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기술보증기금은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업 단위가 아닌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을 정책 대상으로 보증을 하는 것은 기금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재단의 주 목적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 기업만을 대상으로 보증을 운용하는 것은 재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16)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7) 「기술보증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8)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안 제15조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와 지방세 특례는 각각 「조세특례제한법」¹⁹⁾과 「지방세특례제한법」²⁰⁾에 따라 실질적인 감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개별 법률에서 조세특례 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직접 조세 감면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²¹⁾

19)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 25. (생략)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1)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제정안의 세제 특례 규정에 대해 불수용의 의견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정책 추진을 강조하고 동 조항은 기업부설연구소 제도의 역사적 의의를 고려하여 타법에도 널리 규정되어 있는 조세특례 지원의 선언적 규정으로써 필요하다는 의견임.

나. 포상 및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등(안 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17조는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홍보 사업 등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18조는 포상의 근거를 규정하며, 안 제19조는 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20조는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7조(홍보사업 등)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유공자 포상 등) 정부는 매년 기업의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 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의 공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4일을 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관한 육성·지원 정책의 수립·조정 및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이하

제 정 안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역량 강화 지원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술애로 해결 지원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술협력 활동 및 기업부설연구소등과 공공연구기관 간의 연구개발 협력 지원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관련 동향조사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관련 데이터 분석·활용 지원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정책 개발 지원
7.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시정명령과 업무정지의 기준·절차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안 제19조에서는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한 기업연구소 및 기업연구자들에 대한 국가적 인식 제고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최초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일인 10월 24일²²⁾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려는 것임.

지난 2023년 10월 24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주관으로 제2회 기술개발인의 날 행사²³⁾를 개최한 바 있는데, 제정안은 기술개발인의 날을

22) 1981년 10월 24일 46개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최초로 인정되었음.

23) 제2회 「기술개발인의 날」 기념식 개요

법에 명시하고 그 명칭을 “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로 하려는 것임.

기념일의 지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기념일을 지정할 때에는 기존 기념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기념일로 지정해서는 안된다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²⁴⁾

현재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생활의 과학화 추진을 내용으로 매년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기념일로 지정하여 행사를 추진하고 있음.²⁵⁾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일시/장소) '23. 10. 25.(수), LG사이언스파크(서울 마곡)※ 국정감사('23. 10. 24.)로 인해 하루 늦춰 기념식 개최▶(주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국회의원 김영식▶(주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참석) 국회 김영식, 이원욱, 양향자 의원,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 한국산업기술협회 구자균 회장, 수상자 및 기술개발인 등 300여 명▶(내용) '기술개발인의 날' 기념식 및 기술혁신 유공자 표창,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및 기술경영인상 시상 등 |
|---|

24)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 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정부가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고려할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해야 한다.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기념일의 지정기준(제2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다.
 - 가. 국가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날 또는 민족정기를 널리 알리거나 호국정신의 뜻을 기리는 날
 - 나. 과학기술·경제발전·국민복지 등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기틀을 확립하는 데 의의가 큰 날
 - 다. 문화예술의 창달과 전통적 윤리가치의 계승·확립을 위해 국민적 인식을 같이 하는 날
 - 라.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하여 기념하고 있는 날
 - 마. 그 밖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념일로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날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념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 가. 의의나 성격이 기존 기념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 나. 의의나 성격이 특정 지역, 일부 집단 및 개별 이익단체 등에만 국한되는 경우
 - 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주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라. 그 밖에 민간자율성 신장이 요구되거나 순수 민간 분야의 기념일인 경우

개정안의 “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을 살펴볼 때, 기업 연구개발 진흥은 민간(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매년 4월 21일에 진행 중인 “과학의 날”과 별도로 기념일을 지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임.

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기보다는 과학기술분야의 정책적 판단을 통해 별도의 기념일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25)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행사 내용
14	과학의 날	4. 2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생활의 과학화 추진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5. 제5장 보칙

가. 업무의 위탁, 현장조사, 감독명령 등 벌칙, 과태료 등(안 제 21조부터 제28조까지)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21조부터 제28조는 업무의 위탁, 현장조사, 벌칙,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21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현장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제21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등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수행여부 및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에 관하여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신청하거나 변경을 신고한 경우 2.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인정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경우 3. 제9조의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출입조사서(이하 “현장출입조사서”라고 한다)를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과 장소 3.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4. 조사범위와 내용 5. 제출자료 6.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제 정 안

7.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현장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현장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④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현장조사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23조(감독명령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자료 제공의 요청 및 비밀유지의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제2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제7조 또는 제8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제공에 대하여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제공 요청, 그에 따른 이용·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이용·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종류 및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정 안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6조(벌칙)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제25조 및 「형법」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받은자
2. 제10조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자
3. 제10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 실적 등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이 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작성한 자
4. 제10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 실적 등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이 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작성하도록 도와준 자
5. 제10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받은 자
6. 제10조제6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자

제 정 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6항을 위반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사칭한 자
2.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사칭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2) 검토의견

제정안의 보칙 규정은 지난 21대 국회 제410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안건이었던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²⁶⁾에서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 및 타 정부부처의 이견 조율을 통한 최종 수정의견과 동일하게 발의된 것으로 현장조사의 절차, 벌칙과 과태료의 수준 등 법제적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26) 김영식의원 발의,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120420, 2023. 3. 3.

6. 부칙

가. 시행일, 적용례,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부칙 제1조부터 제7조까지)

1) 제정안의 내용

안 부칙 제1조부터 제7조까지는 시행일, 적용례,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의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문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은 이 법 시행 이후 15일이 경과한 후에 실시하는 청문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등은 이 법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등으로 본다.
제5조(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본다. 이 경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 정 안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 중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마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5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④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⑤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2조의2제2항제5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

제 정 안

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⑦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⑧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⑨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⑩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⑪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제 정 안

⑫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1)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⑭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⑮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⑯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⑲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정 안

1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 ⑳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 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1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㉒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 ㉓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의2제2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 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 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6조제5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 ㉖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

제 정 안

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㉗ 해양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㉘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㉙ 해양수산물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㉚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㉛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제 정 안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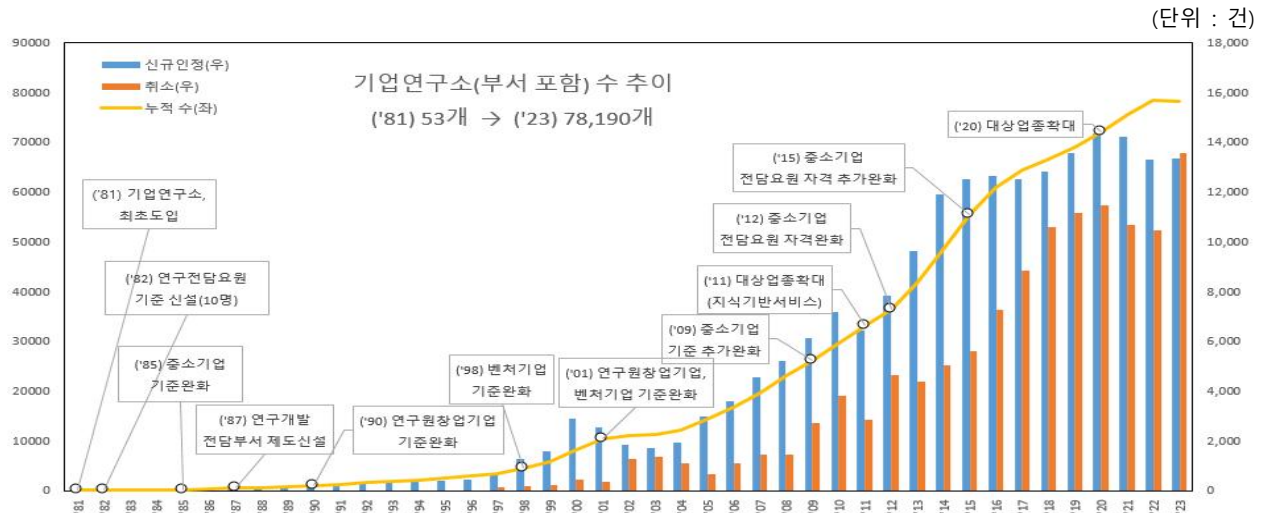
2) 검토의견

타 법률에서 「기초연구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면서 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데, 제정안에서는 타 법률의 개정을 부칙을 통해 충분히 반영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229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증가추이 및 제도개편 연혁



- (‘81년) 기업부설연구소 제도 및 조세지원, 연구요원 병역특례 신설
- (‘82년)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요건 신설
(자연계분야 학사이상 학위를 보유한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확보)
- (‘85년) 중소기업, 국외 소재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수 기준 5명으로 완화
- (‘87년)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제도 도입
- (‘90년) 과기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창업 5년 이내)은 연구전담요원 수 기준 3명으로 완화
- (‘98년) 벤처기업은 대표자도 연구전담요원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허용
- (‘01년) 창업 5년 이내의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은 연구전담요원 수 기준 2명으로 완화(‘11년에 ‘창업 5년 이내’ 조건 폐지)
- (‘09년) 중소기업의 연구전담요원 수 기준 3명으로 ‘11년까지 한시 완화
(‘11년에 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 수 기준 3명으로 항구화)
- (‘10년) 신고처리기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16년에 7일로 추가 단축)
- (‘11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분야에 지식기반 서비스분야(11개 업종) 추가
- (‘12년) 중소기업의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 완화(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자 중 해당분야 근무경력 4년(연구개발전담부서 1년 이상 근무 포함)이상인 인력)
- (‘14년)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의 연구전담요원 수 기준 2명으로 완화
- (‘15년)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 추가 완화(기술·기능분야 기능사 자격보유자 추가, 연구개발전담부서 1년이상 근무조건 폐지)
- (‘20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분야를 6개 분야(유흥업 등) 제외 모든 분야로 확대
- (‘22년) 인정처리 기간 7일에서 10일로 연장,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3인 유예기간(1년 이내) 부여, 연구전담요원 근무장소 규제완화(재택근무 등)

참고2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주요 지원제도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분	제도명	제도가관	연구소	전담 부서
조 세 지 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일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의 일정률을 법인세에서 공제(당기분 또는 증가분 중 선택) - 당해연도 발생액의 25%(중견기업은 8%, 대기업은 0~2%) - 또는 (당해연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 50%(중견기업은 40%, 대기업은 25%)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출시 해당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중소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 × (30% + 최대 10%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 3]) - 코스닥상장중견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 × (25% + 최대 15%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 3]) - 대·중견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 × (20% + 최대 10%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 3]) * 해당기술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참조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출시 해당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중소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 × (40% + 최대 10%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 3]) - 대·중견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 × (30% + 최대 10%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 3]) * 해당기술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의 2] 참조	○	○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최대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완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최대 10%를 추가공제함 - 공제율: (일반) 3~12%/(신성장·원천기술) 6~18% (국가전략기술) 15~25% - 기본공제+추가공제[(해당연도 설비투자 금액3년 연평균 투자액)×10%]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함)에 대한 취득세의 60%를 감면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를 감면(단, 대·중견기업은 35%, 과밀억제권역 내 설치하는 연구소는 제외) *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1항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이 지출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	○	×

구분	제도명	제도개관	연구소	전담부서
		발비의 대상기술이 같은영 별표7에 해당된다는 심의결과를 받은 경우, 기존 공제율에서 각각 10% 추가공제 가능		
조세지원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중소벤처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 비과세	○	○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 (관세법 제90조)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	○	○
인력지원	전문연구요원제도 (병역법 제36조) <병무청>	○ 일정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규채용하는 연구전담요원에 대하여 T/O 한도 내에서 병역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신청자격 부여 * 자연계 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소지한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 확보(중견기업의 경우 5인 이상)	○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이공계 신진 연구인력 채용시 연봉의 50%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경험을 보유한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시 연봉의 50%를 지원하여 연구인력 부족현상 해소 및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	○	○
자금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R&D관련 부처>	○특정연구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비로 지원(사업신청자격 부여 또는 가점부여)	○	△
	기업부설연구소 R&D 역량강화 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업연구소를 R&D 역량에 따라 그룹화하고, 그룹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상위 그룹으로의 도약 지원(사업신청자격 부여)	○	×
	우수기업연구소육성 (ATC+)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한 R&D 역량향상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 및 산업 혁신의 핵심 주체로 육성(사업신청자격 부여)	○	×
기타지원	기업부설연구소의 보전산지 전용 추천 (산지관리법 제12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전산지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허가에 대해 산지관리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추천을 받을 경우 보전산지 전용을 허가	○	×
	벤처확인 및 이노비즈 인증 <중소벤처기업부>	①벤처기업 유형 중 연구개발기업 확인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에 한해 가능 ②벤처기업 기타 유형 중 기술성 평가항목, 이노비즈 인증 시 R&D 활동지표 평가항목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의 배점비중이 높음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인정 (기간제법 제4조) <고용노동부>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인정		

☞ 이외에도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국영업체 포함)에서는 각종 기술개발자금 또는 사업발주 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심사·선정 시 우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